

#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검토 경위

- 제출일자: 2023. 3. 3.
- 제출자: 서구청장
- 회부일자: 2023. 3. 6.(의안번호 제424호)
- 검토기간: 2023. 3. 9. ~ 3. 13.

### 2. 주요 내용

-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에 인동촌노인복지관을 추가하고 이를 정리하여 별표로 이동(안 제2조)
- 시설의 이용자 범위 수정(안 제5조~제6조)
- 시설의 사용허가 규정 신설 및 정비(안 제6조의2)
- 이용료 및 사용료 내용 정비(안 제7조)
- 조항 이동,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(안 제1조 외)

### 3. 참고 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)

#### 나. 입법예고: 2023. 3. 8. ~ 3. 13.(접수된 의견 없음)

#### 다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### 4. 검토 의견

## 가. 법적 근거 및 타당성

-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개관하는 인동촌노인복지관이 다른 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.

## 나. 조문별 심사 항목 검토
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 - 안 제2조에서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정리하여 이동한 것은 행정복지센터, 도서관 등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,
  - 안 제4조의2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 것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및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 성별 영향 관련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,
  - 현행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복지관 이용 허가에 관한 사항은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4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안과 같이 삭제함이 타당하고,
  -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은 안 제6조의2로 옮긴 후 세부 절차를 정비하였는데,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근거 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제3항제24호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.
  - 그 밖에 조항의 이동이나 별표·서식의 정비, 용어 수정 등은 대체로 <법령 입안·심사 기준>과 <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>에 어긋나지 않도록 알맞게 조치한 것으로 보임.

## 다. 종합 의견

-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정비가 이루어졌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수정된 사항은 모두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